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81
----------	------

2024년 5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4월 3일
다. 회부일 : 2024년 4월 8일
라. 상정일 :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4월 29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진만)

가. 제안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운영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 및 금고지정 절차 관련 공정성 미비 조항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안 제10조).

2)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예산담당관 협조, 비용 미발생)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4. 2. 15. ~ 3. 6.)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사항과,
 - 금고지정 방식 결정 후 관련 금융기관에의 통지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하며 일부 조문을 이동 배치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관련하여,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여 부패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시행*한 바 있음.
 - * 2023년 7월, 지방의회, 기관 운영, 사업추진 등 3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436건의 개선 권고사항 도출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과 금고지정 절차의 공개성 강화를 위해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권익위의 부패 발생 여지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조례 개정) 조치기한(2024.3.31.)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 제출 시기(2024.4.3.)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의무 강행규정(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의 법제심사 과정’(이하 “법제심사”)에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제척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을 반영하고(제1항),

* 위원을 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제척 → 위원을 위원회에서 제척

- 위원이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 제척사유 등이 있는 위원은 당연히 회피를 해야 함에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당연규정으로 개정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제3항).
- 위원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척: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 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됨.· 기피: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것임· 회피: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임. |
|--|

- 본 개정안은 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강화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7.)

□ 권고 대상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조치기한 : '24. 3. 31.

유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기관운영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① 금고지정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부산
	-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	강원, 경기, 대구, 대전, 서울 ,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② 금고지정 절차 공개성 강화	
	-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금융기관 통지 의무화	부산, 서울 , 울산, 제주
	- 평가기준 교부·열람 의무화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
	③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 예산으로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규정 마련	대전, 제주, 충남

〈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u>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u>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u> -----.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 ~ 3. (현행과 같음)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u>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u> ----- <u>경우</u> ----- <u>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 다만, 권익위는 위원의 회피 규정의 개선 외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 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피 신청만으로도 특정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 또는 남용될 수 있는바,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권익위 개선안(예시)〉

개선안(예시)
<p>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p>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u>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 따라서 권익위의 기피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안 제2항), 동반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할 수 있게 하는 수정안 마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의 제척 대상자 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시장 제출안 최대한 반영

〈본 개정안 제10조에 대한 수정 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한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개정안과 같음)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 ----- 경우에는 -----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한편,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서는 해당 위원을 일반적으로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심의·평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조례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만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4년에 한번 개최되는 위원회로,
 - 위원은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제13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 시장은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제14조).
- ※ 금고 지정 절차 : 입찰공고(자치단체장) → 제안서 제출(금융기관) → 제안서 평가(금고지정심의위원회) → 금고지정(자치단체장)
- 따라서, 본 조례는 일반적인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이 아닌 “심의·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안서 평가 역할을 강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2) 금고지정 관련 통지 의무화(안 제12조)

- 안 제12조제1항은 권익위의 금고지정 관련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하려는 것임.

*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7.)

<input type="checkbox"/> 권고 대상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input type="checkbox"/> 조치기한 : '24. 3. 31.		
유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기관운영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② 금고지정 절차 공개성 강화	
	-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금융기관 통지 의무화	부산, 서울 , 울산, 제주
	- 평가기준 교부·열람 의무화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

- 금고 지정 절차 중 의무 사항인 금고 지정 공고의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 관련 사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선별적 정보제공 등 특혜 발생 소지가 있어 이를 의무적 절차로 개선하도록 서울시 등에 권고 (2023.7.)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금고지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측면에서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 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u>금고 참여의사</u> 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u>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 ----- <u>금고지정에 참여의사</u> ----- ----- ----- <u>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3) 조문 재배치(안 제9조제4항(삭제), 안 제11제2항(신설))

- 안 제11조제2항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본 조례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서기의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1조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으로,
 -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구성원이 아닌 위원회 운영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느바,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조례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간사·서기 관련 조문 개정 사항〉

현행(삭제)	개정안(신설)
제9조(위원회 구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

4) 자구 정비 등(안 제2조 등)

- 안 제2조 등 자구 정리 조문은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법제심사 과정에서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 법령은 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과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볼 때 본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법제심사 제시 반영사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용어의 정의)	(정의)	조 제목 정비
	정의는	뜻은	일반적 정의 형태
제2조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그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문장 정비
	형식을 빌어	형식으로	용어 순화
	직영기업	직영기업이나	문장 정비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제1호의 금고를	금고 정의규정 인용
3조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열거형 포기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법령명 포기법 적용

조 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간결하게 표시
6조	(금고의 지정방법)	(금고지정 방법)	
9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위원장 약칭 규정, 용어 정비 등
	위촉하되 위촉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 또는 위촉된	임명/위촉 구분 규정
10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장 정비 (수정안 제시 조문)
11조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법제처)
12조	금고 참여의사	금고지정에 참여의사	조문 명확화
13조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자료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또는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	조문 정비
	작성,	작성하여	
15조	시보	서울시보	용어 정비
16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조문 정비

5) 기타(부칙)

- 안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시에만 개최되는 위원회로, 현행 금고의 계약기간*과, 위원 회피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로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차기 위원회는 2026년 중 개최되는바 시행일(공포일) 외의 적용례나 경과규정 마련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23.1.1. ~ 2026.12.31.(4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이해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 제척이나 기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원은 평가·심의에서의 회피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안 제10조제2항).
- 2) 제척 또는 기피된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781
----------	-------------

제안연월일 : 2024년 5월 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이해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고, 제척이나 기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원은 평가·심의에서의 회피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안 제10조제2항).
- 2) 제척 또는 기피된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p> <p>1. ~ 3. (생략)</p> <p>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p>	<p>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기피 ----- ----- 경우 ----- -----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용어의 정의)”를“(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그의”를 “그가”로, “보관에 속하는”을 “보관하는”으로, “형식을 빌어”를 “형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직영기업”을 “직영기업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을 “제1호의 금고를”로 한다.

제3조 중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금고의 약정기간)”을“(금고약정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고의 약정기간은”을 “금고약정 기간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금고의 지정방법)”을“(금고지정 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되”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중 “위촉된”을 “임명 또는 위촉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

제12조제1항 중 “금고 참여의사”를 “금고지정에 참여의사”로,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를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에서”를 “금융기관이”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을 “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또는”으로, “자료와”를 “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로, “작성,”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보”를 “서울시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를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금고"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u>그의</u> 소유 또는 <u>보관에 속하는</u>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u>형식</u>을 <u>별어</u>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p> <p>2. (생략)</p> <p>3.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u>직영기업</u>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2조(<u>정의</u>) ----- ----- <u>뜻은</u> ----- -----.</p> <p>1. ----- ----- -- <u>그가</u> ----- <u>보관하는</u> ----- ----- ----- <u>형식</u> <u>으로</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직영기업</u> <u>이나</u> ----- ----- -----.</p> <p>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금고지정"이란 <u>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u>제1호의 금고</u>를 ----- -----.</p>
<p>6.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u>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 <u>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u>----- ----- 「<u>지방공기업법</u>」----- ----- -----.</p>
<p>제5조(<u>금고의 약정기간</u>) <u>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u></p>	<p>제5조(<u>금고약정 기간</u>) <u>금고약정기간은</u> ----- ----- -----.</p>
<p>제6조(<u>금고의 지정방법</u>) (생략)</p>	<p>제6조(<u>금고지정 방법</u>)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u></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 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u></p> <p>⑤ <u>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u></p> <p>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u></p> <p>1. ~ 3. (생략)</p> <p>② <u>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u></p>	<p><삭제></p> <p>③ ----- <u>임명 또는 위촉된</u> -----.</p> <p>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 <u>하나의 사안을 심의·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u>위원 본인이</u>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u>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은</u>----- ----- ----- <u>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② <u>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맡는다.</u></p>
<p>② <u>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③ ----- - <u>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u> - -----.</p>
<p>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u>금고 참여의사가</u>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u>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u></p>	<p>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 ----- ----- ----- <u>금고지정에 참여의사</u>----- ----- ----- <u>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u>금융기관에서</u> 제출한 제안서를 <u>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u> 공시한 <u>자료와</u>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u>작성</u>,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5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u>시보에</u>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u>해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 <u>금융기관이</u> ----- ----- <u>정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또는</u> ----- -- <u>자료 및 제7조에 따른 평가기준과</u> ----- ----- <u>작성하여</u> ----- ----- ----- ----- -----.</p> <p>제15조(금고약정) ① ----- ----- ----- <u>서울시보</u>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 ----- ----- ----- ----- ----- ----- <u>금고약정을</u> <u>해지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